

제239회 임시회
2005. 6. 16(목)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□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

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

「**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」에 대해 보고
드리겠습니다.

○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
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,

-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
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
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조례 제명중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”을 “충청북도교육
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”으로 하고,

- 제1조 목적중 “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”으로 하는 것입니다.

○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현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하여
- 여비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